

의안번호	2202297
의 퇴 인	조경태의원
회 답 일	2024. 8. 19.
추 계 번호	24B234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 및 공동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개정소요는 2026년 111억 6,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8억 2,100만원(연평균 111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안 제55조의18 신설)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제1호)	11,074	11,074	11,074	11,074	11,074	55,371	11,074
	선원퇴직연금제도 관련 공동 연구사업 지원(제2호)	90	90	90	90	90	450	90
추가재정소요		11,164	11,164	11,164	11,164	11,164	55,821	11,164

- 주: 1.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나, 해외취업상선 및 해외취업어선의 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3. 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의 연간 조성규모는 퇴직연금 가입률 및 연금 지급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려금 지급에 따른 ①정부 출연금의 총 규모를 산출하고 ②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5조의18 신설(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 1.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2. 선원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노사단체 및 선원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 사업 3. 그 밖에 선원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5조의18 신설(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¹⁾ 지급을 위한 출연금 규모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해양수산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2013)를 바탕으로 산출함

○ 퇴직연금 지급까지는 제도 도입 후 최소 5년의 여유기간이 있으며,²⁾ 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의 연간 조성규모는 퇴직연금 가입률 및 연금 지급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려금 지급에 따른 ①정부 출연금의 총 규모를 산출하고 ②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나, 해외취업상선 및 해외취업어선의 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함³⁾

1) 안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장려금)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선원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선원퇴직연금급여는 10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60세 이상의 선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1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부담금을 납입한 선원도 수급 가능하므로(안 제55조의16), 제도가 도입되고 최소 5년 후에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음

3) 선원퇴직연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며, 해외취업 선원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대행회사가 존재하고 대행회사가 실제로 선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보고서,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12.)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

- 2015년, 해양수산부는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약체결,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국회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한 바 있음

[표 2]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 경과

날짜	내용	비고
2015.12.22.	선원퇴직연금제도 노·사·정 협약체결 ⁵⁾	서울
2016. 3.11.	선원퇴직연금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 해운물류국장
2016. 4.22./5.20.	운영협의회 실무작업반 회의	
2016. 5.26.	선원퇴직연금제도 설명회 개최 － 해운조합, 선사 및 노조단체 회원 등 약 100여 명	부산
2016. 8. 9.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 정인화의원, 이완영의원 주최	국회 의원회관
2016. 9.2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제2002457호) － 주요내용: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제20대국회 임기만료 폐기 (2020. 5.29.)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2023.11.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제2125363호) － 주요내용: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제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2024. 5.29.)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02457호, 정인화의원 대표발의)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 국적선의 선원 외에 해외취업선원(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적선에 승무하는 선원)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선원 퇴직금 지급 제도 시행중

※ [참고자료 1] 현행 선원 퇴직금 제도 개요

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내딛다-해수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당시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장려금 규모는 법정 최소적립금의 2% 규모로 합의
 - 2015~2016년 노·사·정 협의를 통해 각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의 장려금 중 노·사 1%, 정부가 1% 분담하기로 합의(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노·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음
 - (선원퇴직연금)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선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선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선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을 사전에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선박소유자의 법정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80 이상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을 사전에 결정
 - 선박소유자의 부담금은 가입한 선원의 연간 승선평균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원의 선택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원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함
 -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부담금 납입 불가

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2015.12.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10361>>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시행중

※ [참고자료 2]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참고자료 3]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분석 참고

나.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안 제55조의18 신설)

- 본 추계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 출연금(안 제55조의18제1호) 및 공동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안 제55조의18제2호)에 대해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 해양수산부는 2013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 연구보고서: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라 함)
 - 연구기관: 한국사회보험연구소(김용하 외)
 - 발행년월: 2013.12.

(1) 장려금 지급(안 제55조의18제1호)

-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성하는 장려금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계하며,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음
 - 참고로 안 제55조의14⁶⁾는 장려금을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선원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
 - (장려금 보장수준율) 법정 최소적립금의 2% 규모
 - (정부 출연금 분담률) 정부가 장려금의 절반(50%) 출연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대하여는 2015년 노·사·정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⁷⁾하고 공동으로 2% 수

6) 안 제55조의14(선원퇴직연금 장려금) ①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선원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재원(財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내딛다—해수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2015.12.21.

- 준의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규모로 출연하기로 합의⁸⁾한 바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선원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으로 가정(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선박소유자의 법정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80 이상
 - **(선원 수 및 월평균 임금)** 「한국선원통계연보 2024」(2023.12.31. 기준)
 - 이때, 2023년 기준 모든 선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연도별 선원취업 현황: 2019~2023년

(2023.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34,123	33,565	32,510	31,867	30,587
국적선 (Korean Flag Vessel)	계		31,214	31,035	30,337	29,919	28,864
	상선 (Merchant)	소 계	16,179	16,060	15,652	15,501	16,152
		외 항 (Ocean)	8,079	8,145	8,238	8,066	8,634
		내 항 (Coastal)	8,100	7,915	7,414	7,435	7,518
	어선 (Fishing)	소 계	15,035	14,975	14,685	14,418	12,712
		원 양 (Ocean)	1,369	1,232	1,151	1,157	1,104
		연근해 (Coast)	13,666	13,743	13,534	13,261	11,608
해외취업선 (Foreign Flag)	계		2,909	2,530	2,173	1,948	1,723
	상 선 (Merchant)		2,537	2,179	1,863	1,643	1,423
	어 선 (Fishing)		372	351	310	305	300

자료: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연도별 선원취업현황(Employed Seafarers by Year),” 「한국선원통계연보2024(2023.12.31. 기준)», 2024. 5. 31., 295쪽

8)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정인화·이완영 의원 공동주최, 2016.8.9.) 중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토론문 참고

[표 4] 연도별 월평균 선원임금 현황: 2019~2023년

(2023.12.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임금(전체)	4,737	4,928	4,969	5,184	5,559
외항선	6,030	6,137	6,273	6,912	7,365
내항선	3,792	3,955	3,997	4,221	4,349
원양어선	7,399	7,627	8,009	9,545	10,006
연근해어선	3,843	4,125	4,160	3,930	4,323
해외취업상선	7,192	7,657	7,826	8,272	8,518
해외취업어선	6,997	7,320	7,109	11,706	11,332

자료: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연도별 선원취업현황(Employed Seafarers by Year),” 「한국선원통계연보2024(2023.12.31. 기준, 2024. 5. 31., 310쪽

- 이상의 가정 및 주요 변수를 바탕으로,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의 추계 산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선원퇴직연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_{i,t} \\
 &= \sum_{i,t} [\{ (\text{법정 최소적립금}^a) \times \text{장려금 보장수준율}^b) \\
 &\quad \div (\text{출연금운용 기대수익률}^c) \times \text{정부 분담률}^d \}]_{i,t}
 \end{aligned}$$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2026~2030년)
- i 는 업종유형: 외항상선, 내항상선, 해외취업상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어선 ($i=1$ 부터 $i=6$ 까지)

a) 법정 최소적립금 = 선박소유자 부담금 총액* × 80%

* 선박소유자 부담금 총액 = 업종유형별 선원 수 × 월 평균임금(2022년 말 기준)

b) 장려금 보장수준율 = 2% (2015년 노·사·정 합의)

c) 출연금운용 기대수익률 = 2.5%

(연구보고서에 따른 민간퇴직연금 상품 평균수익률 수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d) 정부 분담률 = 50% (2015년 노·사·정 합의)

- 이상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퇴직선원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 전체 규모는 553억 7,100만원 규모로 산출됨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정부 출연금을 매년 균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선원퇴직연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 전체 규모 산출

업종유형	선원수 (A, 명)	월 평균 임금 (B 백만원)	선박소유자 부담금 총액 (C=A×B, 백만원)	법정 최소적립금 (D=C×80%)	장려금 (E=D×2%)	출연금 수익률 (F, %)	출연금 총액 (G=E/F, 백만원)	정부 출연금 (H=G×50%, 백만원)
외항상선	8,634	7.37	63,589	50,872	1,017	2.50	40,697	20,349
내항상선	7,518	4.35	32,696	26,157	523	2.50	20,925	10,463
원양어선	1,104	10.01	11,047	8,837	177	2.50	7,070	3,535
연근해어선	11,608	4.32	50,181	40,145	803	2.50	32,116	16,058
해외취업상선	1,423	8.52	12,121	9,697	194	2.50	7,758	3,879
해외취업어선	300	11.33	3,400	2,720	54	2.50	2,176	1,088
합계(평균)	30,587	5.56	173,034	138,427	2,769	2.50	110,742	55,371

주: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나, 해외취업상선 및 해외취업어선의 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1.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해양수산부 연구용역보고서,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12. (한국사회보협연구소 수행)

□ 추계결과, 정부가 퇴직선원 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3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선원퇴직연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출연금 (안 제55조의18제1호)	11,074	11,074	11,074	11,074	11,074	55,371

주: 1.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나, 해외취업상선 및 해외취업어선의 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2. 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의 연간 조성규모는 퇴직연금 가입률 및 연금 지급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려금 지급에 따른 ①정부 출연금의 총 규모를 산출하고 ②추계기간 동안 균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1.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해양수산부 연구용역보고서,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3.12. (한국사회보협연구소 수행)

- (2) 선원퇴직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안 제55조의18제2호)
- 선원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9,000만원으로 가정
 - (유사사례)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사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비용은 9,000만원 규모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공동 연구사업 지원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정부가 선원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노사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선원퇴직연금제도 관련 공동 연구사업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선원퇴직연금제도 관련 공동 연구사업 지원 (안 제55조의18제2호)	90	90	90	90	90	45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현행 선원 퇴직금 제도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재 「선원법」 제55조⁹⁾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중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기준) 평균으로, 참여선사는 평균 139개사, 가입선원 수는 평균 8,373명 규모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00만원 수준

－ (운영주체) 「선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

－ (퇴직금 지급규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에 대한 국고지원 사례는 없음

<퇴직금 운영 현황: 한국해운협회 소속 회원사(외항선사) 대상 조사 결과>

연도	참여선사수	가입선원수	1인당 지급액 (연간 평균 퇴직금(세전))	비고
2021	126개사	8,238명	6,723천원 수준	월평균임금/승선평균임금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 포함)
2022	114개사	8,066명	6,912천원 수준	
2023	176개사	8,816명	7,365천원 수준	
평균	139개사	8,373명	7,000천원 수준	

주: 전체 선사의 퇴직금 지급액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선원통계연보」 상 업종별 임금현황을 참조하여 추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9)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 ⑤ (생략)

[참고자료 2] 퇴직연금제도 개요

(고용노동부)¹⁰⁾

□ 개 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 '22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336조원, 가입자 694.8만명(가입률 53.2%), 도입 사업장 43.6만 개소(도입률 26.8%)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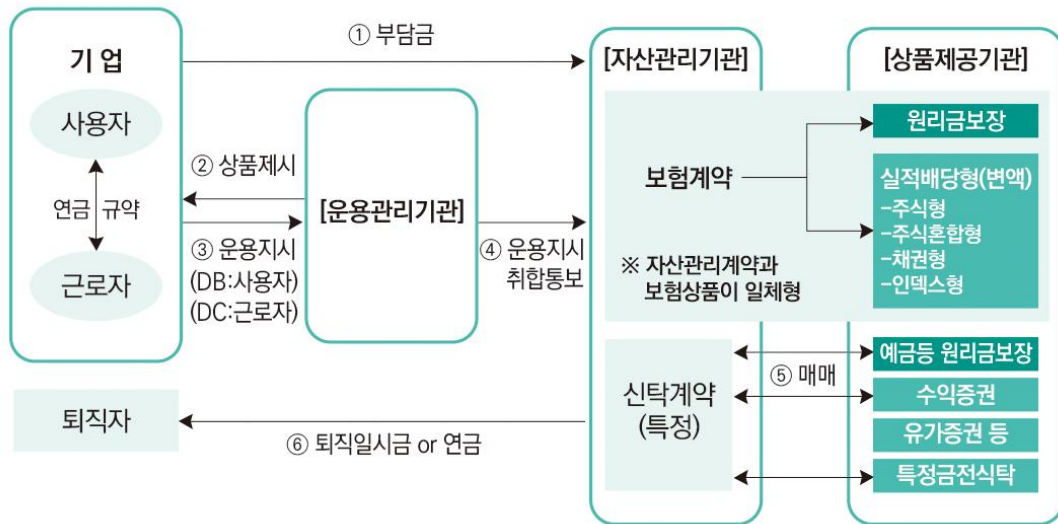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퇴직연금소개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132> 접속일: 2024.8.16.

-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참고] 한눈에 보는 퇴직급여(연금) 제도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도별 납입 부담금수준	－	금년 기준책임준비금－전년 기준 책임준비금	"			"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 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 갖춘 사업장	채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68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해당없음

[참고자료 3]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¹¹⁾

◆ '23년말 적립금은 382.4조원으로, 전년(335.9조원) 대비 13.8% 증가

◆ '23년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

□ **(적립금)**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4조원으로 전년(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 증가

※ 적립금 추이(조원): ('21년) 295.6 → ('22년) 335.9 → ('23년) 3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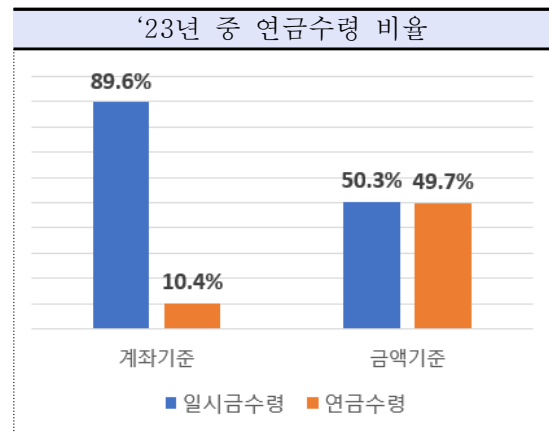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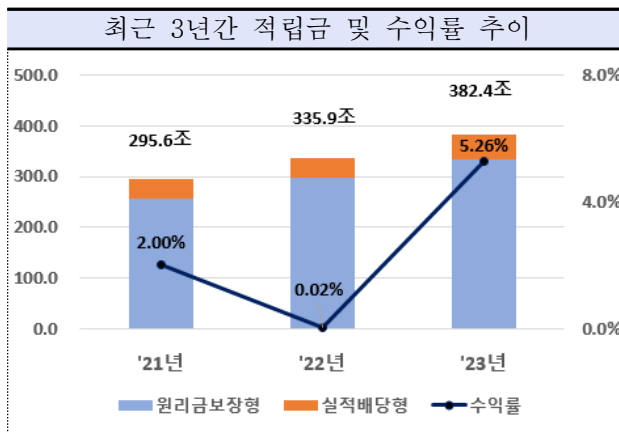
○ 적립금 중 87.2%(333.3조원)는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며, 12.8%(49.1조원)는 실적배당형에 해당

□ **(수익률)** '23년 적립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

※ 연간 수익률 추이(%): ('21년) 2.00 → ('22년) 0.02 → ('23년) 5.26

○ 운용방법별 연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4.08%, 실적배당형 13.27%로 전년 대비 각각 2.25%p, 27.47%p 상승

□ **(연금수령)** '23년 중 퇴직연금 수령(만 55세 이상) 개시 계좌 중 연금형태 수령 비율은 10.4%(금액기준 49.7%)으로 전년(7.1%) 대비 3.3%p 상승



※ 46개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 중 '23년말 현재 적립금이 있는 43개 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 기준으로 작성

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4.5.1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556>